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86

발의연월일: 2021. 4. 14.

발 의 자:이병훈·홍성국·기동민

최종윤 · 김승원 · 정성호

이성만 · 김영호 · 정청래

오영환 · 임오경 의원

(119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.

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어 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 생을 친 사고가 발생하였음. 해당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이었으나, 신 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
그러나, 현행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은 구조·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·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·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 상을 참작하여 「형법」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 구조구급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음.

이에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에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형을 감면

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4(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) 경찰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「형법」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의4(직무 수행으로 인한
	형의 감면) 경찰공무원이 제2
	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
	정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
	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
	피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에게
	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
	정상을 참작하여 「형법」 제2
	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
	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